

* 총 평

(남부 행정고시 행정법 박철한 강사)

I. 전체난이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답이 쉽게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9급을 서울시까지 응시한 학생들의 경우 각론이 조문형식이라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각론의 경우도 중요지문 중심이고 어려운 문제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실제로 수험생들이 알려진 점수의 경우도 행정법의 경우는 꽤 높았다. 전체적으로 답이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몇몇 지문을 제외하고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II. 특징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아 올해만의 특징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

1. 법령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칠급이다 보니 각론의 경우 상당수 법령문제로 출제가 되고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법령문제가 많았다. 원래 법령문제가 많은 경우 문제 난이도는 높아지나 이번의 경우 법령의 경우도 기본 법령집을 반복하였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2. 행정법총론은 7급과 9급이 따로 없다.

올해 14년도 국가직 9급과 비교할 때 오히려 총론의 경우는 더 쉬웠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따라서 총론의 경우 7급과 9급을 따로 보거나 모의고사를 따로 푸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9급 유형과 7급 유형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었으나 올해는 그런 것도 많이 보이지 않는다.

III. 향후 시험대비

1. 지방직을 준비하는 학생들(9급에서 7급으로)

9급을 준비하다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명심하여야 할 것이 각론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각론은 열심히 반복하면 쉽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령이 주로 출제되고 총론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각론을 등한시 하기 쉽다. 따라서 각론은 보고 또 봐서 반복하는 것이 지방직 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총론은 새로운 내용을 보기 보다는 기존 기본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아야 할 것이다.

2.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행정법은 항상 처음 접근하기가 힘들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과목이다. 따라서 처음에 힘들더라도 철저하게 내용을 이해하려 한다면 조금 생소한 내용 보지 못한 내용들이 나와도 다른 과목과 달리 답을 유추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꼭 기본부터 천천히 내공을 쌓는데 노력하게 된다면 추후 법과목 때문에 좌절할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인 점에서 공법상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 ④ 명문의 금지규정이 있거나 일신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1 정답 ①

- ①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대판 2001.8.24, 99두9971). 즉 도달만 가지고는 안 되며 처분이 있어야 한다.
- ②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2.3.31, 91누4911)
- ③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법적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중 법률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행위와는 구별된다.
- ④ 대리되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사인의 인격적 개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는 행위로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직원의 제출 또는 그 철회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행위와 같이 명문의 규정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일신전속적이 아닌 행위들은 대리가 가능하다. 즉, 영업허가신청이나 부동산등기신청은 대리인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상 처분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정답 ③

- 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②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 ③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 ④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3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② 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 ③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 ④ 교육에 관한 사도의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사도지사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3 정답 ②

- ① 법규명령의 제정 당시에는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인 법규명령이었다도 사후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대판 1995.6.30. 93추83).
-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2.5.8, 91누11261).
-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재 1995.4.20, 92헌마264).
- ④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기관인 사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6.9.20, 95누8003).

4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자효 행정행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제3자효 행정행위에 의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취소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행정행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3자에 의해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제3자효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 ④ 제3자효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4 정답 ④

- ① 행정소송법 제20조
- ②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계속중일 것을 요구한다. 즉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동시에 집행정지도 가능하다.
- ③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 ④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무효확인소송에 준용 제38조 제1항)

5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만 사인의 소유에 속하는 공물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국가배상법 의 규정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한 출입금지장치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므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용설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할 관리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정답 ③

- ①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물에는 사유공물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다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다면 이 또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
- ② 양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누가 우선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 국민의 선택에 따라 책임진다.
- ③ 대판 1997.5.16. 96다54102
- ④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 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 (대판 2008.3.13, 2007다29287, 29294)

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 ② 환지계획은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 시키므로 환지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③ 구 도시계획법 상 행정청이 기안·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6 정답 ②

- ①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판 2007.4.12, 2005두1893).
- ② 환지계획은 위와 같은 환지에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

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또는 환지에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과는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대판 1999.8.20, 97누6889).

- ③ 지방장관이 기안,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도시계획 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대판 1985.12.10, 85누186).
- ④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대판 2000.3.23, 98두2768).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②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이나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 ③ 건물의 일부만 수용되어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수용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물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면 되고, 잔여건물에 대한 가치하락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7 정답 ③

- ① 대판 1992.2.11, 91누7774
- ② 손실보상은 현금이 원칙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가 우려될 경우에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동조 제8항)
- ③ 잔여건물에 대하여 보수만으로 보전될 수 없는 가치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판 2001.9.25. 2000두2426)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8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명백하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결정을 하지 못한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8 정답 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 ③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 ④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사직의 권고가 공무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권고사직은 무효이다.
- ③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소청신청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는 후에는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9 정답 ④

- ①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요오디지 않는다. (대판 2014.5.16. 2012두26180)
- ②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이다. (대판 1997.12.12. 97누13962)
- ③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 ④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0.4.8. 2009두17018).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공용 수용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업인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
- ② 공용수용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필요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다.

-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도 사업의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④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10 정답 ③

- ①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 (대판 1987.9.8. 87누395)
- ② 그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용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의 존재가 쌍방의 이익의 비교형량의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대판 2005.11.10. 2003두7507)
-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대판 1994.11.11. 93누19375)
- ④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11 허가, 특허 및 인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 ②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는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 계속 행위이다.
- ③ 도로법 상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 ④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11 정답 ②

- ① 건축신고는 자족적 신고이고 자족적 신고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은 의무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법령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판 1988.8.9. 86누889)
- ②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는 예외적인 승인으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2001.2.9. 98두17593)
- ③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허로 이는 재량행위이다. (대판 2002.10.25. 2002두5795)

- ④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대판 1994.10.14. 93누22753).

12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유제시의 정도는 처분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③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④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2 정답 ④

- ①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여 '처분의 이유제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23조).
- ③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10조 제4항)
- ④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1.28, 2003두674).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 ④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13 정답 ②

- ①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자가 아닌 의무자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②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대판 2010.12.23. 2008두13101)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대판 2006.5.25, 2006두3049).

- ④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은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원고적격을 갖는다(대판 2003.3.28, 2000두9212). 따라서 거부당하게 된 국민은 소를 통해 이를 다룰 수 있다.

14 행정대집행법 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이며,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의무자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그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④ 대집행의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행위에 해당하며, 계고가 반복된 경우 각각의 계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4 정답 ④

- ① 작위의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전환규범)가 없다면, 법률유보의 원칙상 대집행은 불가능하다(대판 1996.6.28, 96누4374).
- ②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2.3.10, 91누4140).
-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하고(행정대집행법 제5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 ④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1994.10.28, 94누5144).

15 위법한 행정작용의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
- ② 수익적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였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불일 수 없게 되었다하더라도 곧바로 그 부담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과세처분을 위한 행정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15 정답 ③

- ① 대판 2008.9.25, 2006다18228

② 대판 2009.2.12, 2005다65500

- ③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1.3.10, 2009두23617).
- ④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3.9.14, 92누4611).

16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천점용권은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에 해당한다.
- ②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에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 ④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될 수 있다.

16 정답 ①

- ①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대판 1990.2.13, 89다카23022)
- ②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96.5.28, 95다52383)
- ③ 공물의 특별사용이 아닌 일반 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 ④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된다. (대판 2007.6.1, 2005도7523)

17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은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 ②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횟수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
- ④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지만, 그에 수반하여 흥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17 정답 ④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2
- ② 경찰권 발동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판 2008.4.24. 2006다32132)
- ③ 대판 1992.4.28. 92도220
- ④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흥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항)

1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관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③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 ④ 행위 자체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공무원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18 정답 ①

- ①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거나 내부의 질서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의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대판 2001.4.13. 200다34891)
- ② (대판 2007.5.10. 2005다31828).
- ③ 성폭력범죄의 담당 경찰관이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세워 놓고 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행위는 국가배상법상의 '법령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8.6.12. 2007다64365).
- ④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원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5.4.21. 93다14240).

19 지방자치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

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9 정답 ③

- ①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
- ②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 제3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
- ④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② 과태료 재판의 경우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정답 ④

-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 ② 대판 2012.10.19. 자, 2012마1163
- ③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2조 제3항
- ④ ①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